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희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합니다.

*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 허용

②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현 행>

C-4자격 (90일 체류)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 (5개월 체류)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 (8개월 체류)	최소 180일(75%) 이상 고용 보장



<개 선>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예) 농번기(4~6월) 주당 48시간(주6일, 8시간),
폭염·장마(7~8월) 주당 35시간(주5일,
7시간) 등 유연한 근로계약 가능,
혹서기 등 근로자의 적정 휴식 보장

③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하여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합니다.

※ 단,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청 인원(20명 → 10명)은 '25.1.1. 시행, 초청 범위(4촌이내 → 2촌)는 '26.1.1.부터 시행

④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중('24.10.31.~'24.12.10.)

⑤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팀 장	전동균 (02-2110-4170)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	담당자	사무관	박정석 (02-2110-4087)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1711)
	농업경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우 (044-201-1721)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460)
	소득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은재현 (044-200-547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